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279
----------	------

발의년월일 : 2004. 10. 2
발 의 자 : 임종응 의원 외 18인

1. 제안이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학교시설 개선 및 질적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급식시설의 설비 및 교육 정보화 사업 등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명시함(안제2조)
-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시세의 4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제3조)
-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보조금 기준액 선정, 신청사업의 심의, 사업의우선순위 결정 등을 심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안 제6조 내지 제10조)
-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교부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3. 조례(안) : 별첨

4.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5. 예산 수반사항 : 기획예산과와 별도 협의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의 4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학교 관련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적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 관계 국장, 시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인사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같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 과장이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설정
2. 교육경비보조 사업심의
3. 교육경비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정기 예산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279
----------	------

제안년월일 : 2004. 12. 13.
제 안 자 : 의회행정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조정하고,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재조정하여 위원회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금 통지를 할 경우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함.

2. 주 요 골자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시세의 “4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제3조)
-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하게 하고, 국·두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제4조 제2항)
- 위원회 위원구성 인원 재조정(안제7조)

-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며, 이때 보조금 교부 목적달성을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신설)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중 “안산시비”를 “시비”로 한다.

제3조중 “4퍼센트”를 “5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안산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제7조제3항중 “시 관계국장”을 “시 관계국장 2인”으로 “3인”을 “2인”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잔임기간으로 한다”를 “잔임기간으로 하되, 시 및 교육청 당연직 국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비 표

원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과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u>안산시비</u>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p> <p>.....</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은 시세의 <u>4퍼센트</u>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p> <p>.....</p> <p><u>5퍼센트</u></p>
<p>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②(생 략)</p>	<p>제4조(보조사업의 신청등) ①.....</p> <p>.....</p> <p><u>안산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p><u>③(원안 제2항과 같음)</u></p>

원 안	수 정 안
<p>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u>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u></p> <p>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p> <p>② <u>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부여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의 심의시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학교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5조(심의위원회 회부) <u>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p> <p>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p>
<p>제7조(위원회의 구성)</p> <p>①~②(<u>생략</u>)</p> <p>③ <u>위원은 시 관계국장, 시의회의원 3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1인,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사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u></p> <p>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와 함께 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구성)</p> <p>①~②(<u>원안과 같음</u>)</p> <p>③ <u>시 관계국장 2인,</u> <u>2인</u></p> <p>④</p> <p><u>잔임기간으로 하되, 시 및 교육청 당연직 국장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u></p>

원 안	수 정 안
<u>< 신 설 ></u>	<u>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을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u>
<u>제13조 (생략)</u>	<u>제14조(원안 제13조와 같음)</u>
<u>제14조 (생략)</u>	<u>제15조(원안 제14조와 같음)</u>
<u>제15조 (생략)</u>	<u>제16조(원안 제15조와 같음)</u>